



지방재정관련 판례

행정자치부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892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가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으로서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나 그 보상관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시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나2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간선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가 이를 이

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이용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가 간선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하였을 것이고,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서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위나 그 보상관계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매수인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매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생기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오○빈 등이 이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부담이 있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13878 판결【집행판결】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일반조건 제31조에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 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중재신청에 따른 제1회 중재기일에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만 항쟁하였다가 제2회 중재기일에서부터 본안에 관한 항쟁을 함과 동시에 적법한 중재합의가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위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피고만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최초의 답변서 제출시 내지 최초의 중재기일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면,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33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3. 12. 29. 피고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지하철 제2기 제2단계 건설공사 중 6호선 6-1공구의 건설공

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19억 8,400만 원, 총공사 부가금액을 1,099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00. 12. 31.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재정경제부 회

계예규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을 위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일반조건 제31조에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1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공사 시공 중 서울시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에 터잡아 2001. 1. 20.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12개 항목의 추가공사비 합계 26,646,134,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01. 4. 2. 개최된 제1회 중재기일에 참석하여 2001. 3. 20.자 답변서 및 같은 달 2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그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중재신청의 본안에 관하여 항쟁하는 내용만이 담겨있는 사실, 그 후 피고가 2001. 6. 25. 개최된 제2회 중재기일에서부터 본안에 관한 항쟁을 함과 동시에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이 중재합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

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중재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도 한 사실, 그러나 위 대한상사중재원은 2002. 12. 16.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이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하고 위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도 위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 아래 원고가 주장하는 12개 항목의 추가공사비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773,022,131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28.부터 원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중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피고만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최초의

답변서 제출시 내지 최초의 중재기일까지 별 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면,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답변서 및 제1회 중재기일에서 중재합의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중재본안에 관하여 답변하였으므로,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재법상의 중재계약으로서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일반조건 제31조 제2항과 같은 선택적 중재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있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란 문구는 계약에 관한 의사해석의 기준과 법원을 명시한 문구에 불과할 뿐 중재합의의 제외대상을 규정한 문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문구가 중재합의의 제외대상을 규정한 문구라고 하더라도 위 문구는 “당해 계약문서와 예

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명백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추가공사비에 관한 분쟁은 그 분쟁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중재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이를 배척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재법의 각 조항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재법 제3조, 제17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법리오해, 분쟁해결방법의 선택권과 일반조건 제31조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